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기춘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4. 16.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4월 23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4,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junga85@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4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13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
찬 성 자 : 나상성·이영호·
이윤정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는 관내 초·중·고 축구부만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으나, 운동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 관내 초·중·고 축구부를 관내 초·중·고 운동부로 감면범위 확대
 - 광명시 유소년축구클럽과 리틀야구단의 감면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축구부”를 “운동부”로 하고, “2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의원 김기춘 (2680- 253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p> <p>4.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u>축구</u>부가 있는 학교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평일 <u>2시간</u>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p>	<p>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p> <p>4. -----<u>운동</u>부----- ----- -----<u>3시간</u>----- -----</p>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